

#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794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3. 1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3. 19

다. 상 정 · 부 결 일 자 : 2003. 3. 26

총무위원회 상정·부결

### 2. 제정이유

○ 신고성건설 추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·

연구·분석하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가. 민선3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갈구하는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고성을 건설하기 위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·자문 기능(안 제3조)

나.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신고성건설추진의 조사·연구·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라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내지 제14조)

마.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폐지(안 부칙 제2항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신고성건설 추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·분석하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  
그러나 조례중 신고성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, 운영비의 확보,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신고성건설 추진위원회와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의 조례 중에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?
- 답 :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에서의 내용은 구성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, 신고성건설 추진위원회의 주요사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필요사항에 따라 군의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010 고성공통나라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정책자문을 받아 군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이며, 새로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임.
- 문 :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의 주요성과는?
- 답 : 주요성과는 농어민 소득증대방안, 관광사업 활성화, 어른들이 우대 받는 노인복지촌 건설, 21세기 장기발전 계획 구상 등 25회 13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음.
- 문 : 현 군수 취임후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적은?
- 답 :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음.

○ 문 : 본 조례 제3조 기능에서 심의·자문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의회의 의정 활동중 일부분에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지?

● 답 : 심의·자문 등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별도 보고 내지 조율없이 어떤 사항도 추진할수 없으며,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추진하여 분야별 군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군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제정 하였음.

**6. 토 론 : 없음**

## **7. 심사결과**

○ 2003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 하였음.